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 | |
|---|--------|
| 선 | 기관 의 장 |
| 람 | |

제1556호 2020. 11. 9(월)

차 례

조 례

| | | | |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03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 | 1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04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 | 5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05호 |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 | 6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06호 |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 ----- | 9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07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 ----- | 10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08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 ----- | 16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09호 | 인천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 | 21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10호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빛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 | 27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11호 |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 | 32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12호 | 인천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 | 34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13호 |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40 |
|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14호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 ----- | 45 |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 4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 6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1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68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8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7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60호 도로구역(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도로)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 7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74호 행복한 서로이음 임대주택 입주희망자 2차 모집공고 - 9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76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108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초소 이전 등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내 청년활동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 정책 개발, 자기계발 및 교육·훈련 여건 개선, 자립 기반 형성, 청년 문화의 활성화, 기타 권익증진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활동공간”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활동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청년활동공간은 인천광역시 서구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안배나 청년활동공간별 기능 특성화 등의 요구에 따라 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청년활동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단순 친목 도모 모임, 회의, 커뮤니티 활동 및 네트워킹 등을 위한 청년 생활소통 공간
2. 창작, 협업, 전시, 공연, 이벤트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
3. 교육 및 훈련, 상담, 취·창업 정보 습득 및 공유 등을 위한 청년 자기계발 및 직업체험 공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 등

제5조(청년활동공간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청년활동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활동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경합할 때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활동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 ③ 구청장은 청년활동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징수) 구청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제5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활동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활동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06호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람”을 “사람 그리고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0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 2.“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경제 촉진사업)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사업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사업
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사업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사업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은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촉진자에 대한 포상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

제12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0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 및 집회 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용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한국수어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한국수어통역사 지원) 구청장은 한국수어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어통역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09호

인천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2. 한부모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이해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사항
3.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과 관련한 사항
4.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관련한 사항
5.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7.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8.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4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가.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나.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라.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마.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류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2.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지원 및 환경 개선
3. 한부모가족 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권익증진
5. 한부모가족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지원
6.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퇴소자립금 지원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9.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제8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급여를 지급한 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한부모가족의 날) ① 구청장은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1.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

○ 성 명: (관계)

○ 생년월일:

○ 주 소:

2. 법률지원 요청내용

3. 재산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확인 동의 여부
동의() 부동의()

20 . . .

신청인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1. 지원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법률지원 요청내용(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2. 지원내용, 진행사항 및 결과

3.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11호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좌하고 원활한 실무처리를”을 “보좌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만 10세에서 만 18세”를 “10세 이상 19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는 단원 결원 시 5명의 범위에서 광역시·도 및 전국대회 3위 이상(단체전 포함)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대회 1위의 입상성적이 있으면 감독, 코치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감독은 태권도 5단 이상이고 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하고 태권도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
- ② 코치는 태권도 4단 이상이고 태권도 단원 경력자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단장이 위촉한다.

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말 단원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12호

인천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적가치”란 사회, 환경, 경제, 복지, 문화, 교통 등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윤리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회, 조합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활용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대상 빈집의 확보)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 빈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빈집정비의 방법)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5.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하는 방법
 제9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사무·상업공간의 용도나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의 목적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이하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빈집의 활용) ① 구청장은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지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4.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기숙사 등의 공유주택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정비를 끝낸 빈집은 제1항에 따른 활용 용도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사무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이용자가 제10조에 따른 빈집의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과 같은 인권 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과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인천광역시 서구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조성하여, 경비원의 안정된 일상생활 영위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및 사용자”란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나 동별 대표자를 포함한 해당 공동주택의 모든 입주자등, 관리주체 및 경비용역업체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및 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경비원 노동 실태 조사
2.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
3. 경비원과 입주자 및 사용자 간 상생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및 사용자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및 사용자는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가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서,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주자 및 사용자가 그 사용·관리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고용 승계가 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경비원이 인권 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하는 등 법률 자문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의 인권 보호·증진 및 근무여건이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 권고를 받은 입주자 및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경비원이 폭행, 폭언 등과 같은 인권 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 구청장은 원인을 야기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다.

제7조(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 및 이용과 같은 경비원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동 인권 교육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의 운영 및 윤리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이바지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30개 이상 집단화”를 “40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 제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에 별도 구획으로 마련한 점포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판매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6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제4조(사용·수익허가)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판매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입점자의 선정 기준 및 자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판매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판매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① 판매시설 사용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판매시설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징수 하되, 최초 허가 또는 허가갱신할 때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고, 이후 계속사용자의 경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한 때에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허가 취소 또는 해지, 폐업하였을 때에는 취소 또는 해지, 폐업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3. 법 제23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감액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판매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판매시설 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판매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판매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판매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점자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판매시설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전통시장 또는 유통분야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사용자의 관리

제12조(판매시설 사용의무) ① 사용자는 판매시설 재산을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시설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의 허가 없이 판매시설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판매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판매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판매시설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3. 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14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사

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판매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을 준수
하여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판매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판매시설을 관
리·운영한다.

제16조(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점포의 사용자, 사용료 등 사용·수익허
가 상태 등 판매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태,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등 판
매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인
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
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판매시설 사용료 (제6조 관련)

가. 사용료 요율

| 대상 | 분류 | 기 준 | 적 용 요 율 |
|----------|----------|------|--|
| 판매 시설 | 토지 건물 | 전용면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
| | | 공용면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서 80% 감액한 금액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사용허가 신청서 [] 갱신허가 신청서

※ 뒷면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 7일 | |
|----------------|--------------|-----------------|-----------------------|-----------|---------|----------------|--|
| 사용자 (대표자) | 법인명 (단체명) | | 법인등록 번호 | | | | |
| | 성명 | | 생년월일 (성별 : 남/여) | | (남 / 여)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사용점포 | | 층제호 | | 허가면적 | | m ² | |
| 사용기간 (영업시간) | | 년 월 일 ~ | | 년 월 일(개월) | | (: 시부터 : 시까지) | |
| 사용료 | | 귀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 | | | |
| 사용조건 | | 귀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 | | | |

위와 같이 사용(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 | |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판매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3. 설계설명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수수료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출 서류) | 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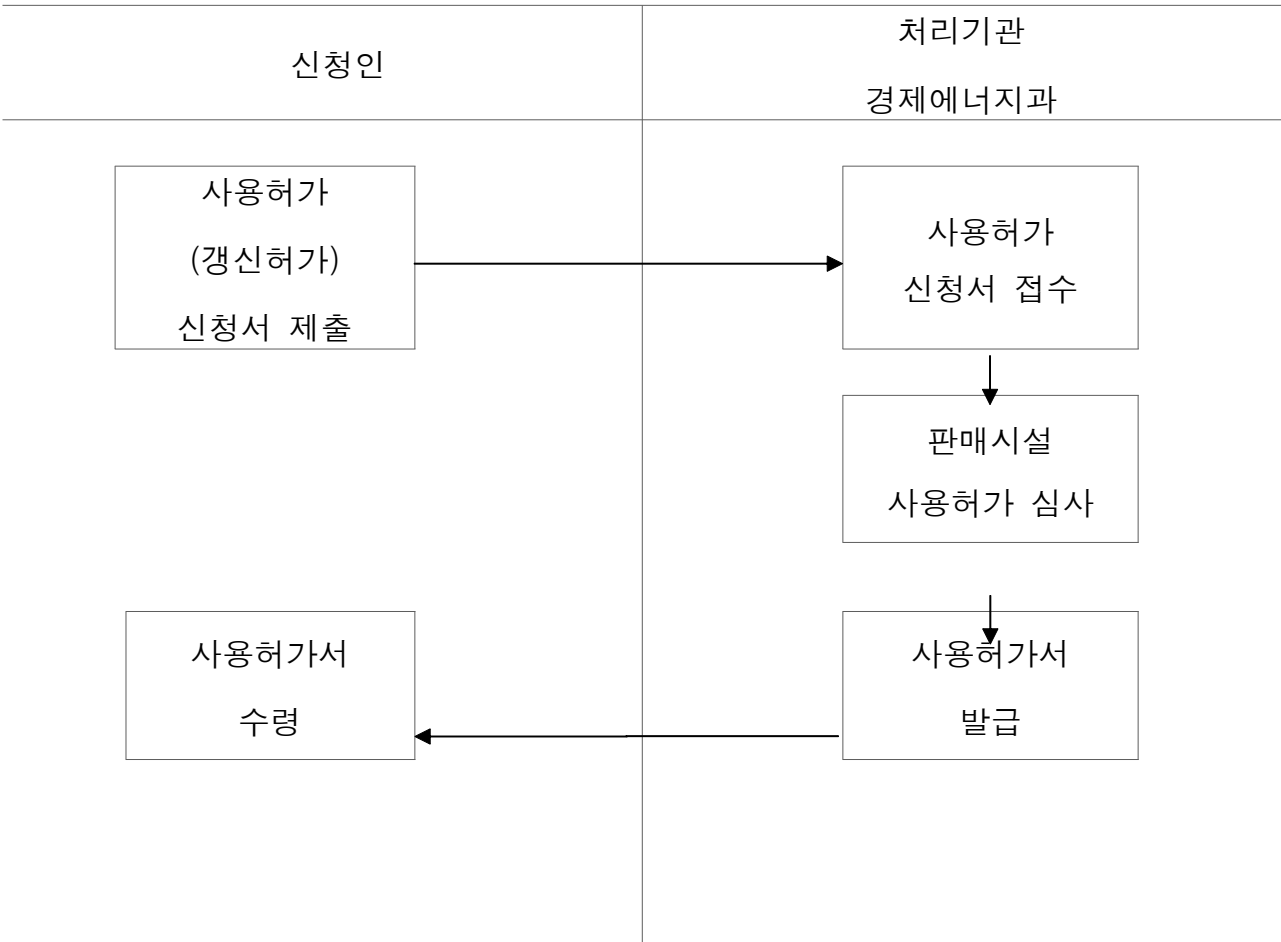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동의]

판매시설 사용허가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신청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뒷면)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물)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층()호 및 그 부지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인천광역시 서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인천광역시 서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 행위라 하더라도 인천광역시 서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 | | | |
|---|---|------------------|----------------|
| 허가 제 호 | | | |
| 공유재산(판매시설 점포) 사용허가서 | | | |
| 허가 구분 | <input type="checkbox"/> 사용허가 <input type="checkbox"/> 갱신허가 | | |
| 성명 (법인명) (단체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남 / 여) |
| 주소 | | | |
| 사용점포 | 층 제 호 | 면 적 | m ² |
| 사용허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 | |
| <p>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p> <p>불임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p> | | | |
| 불임 : 허가조건 1부. | | | |
| 년 월 일 | | | |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 | |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로서 경영할 것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서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39세를 초과

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기업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구청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자 변경, 기업 소재지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구매촉진 지원) 구청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주차요금을 서구 지역화폐로 징수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제1항 관련)

| 구 분 | 1회 주차권 | | 전일주차권 | 월정기주차권 | | |
|-----|---------|-----------------|---------|---------|---------|----------|
| | 최초30분까지 | 최초30분이후 15분당 | | 주간 | 야간 | 주야간 |
| 1급지 | 1,000원 | 500원 | 10,000원 | | | 100,000원 |
| 2급지 | 600원 | 300원 | 6,000원 | 60,000원 | 30,000원 | 70,000원 |
| 3급지 | 400원 | 200원 | 4,000원 | | | 40,000원 |
| 4급지 | 300원 | 150원 | 3,000원 | | | 30,000원 |

- 비 고 -

1. 주차요금표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1-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되 주차장별 이용자 특성 등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가. 주간 : 09:00부터 19:00까지
 - 나. 야간 :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가 따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가 정한다.
4. 노외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요금으로 징수한다.
5. 1구획은 국토교통부령 제3조에 따른 표준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수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6. 주차요금의 특례
 - 가.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는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월정기주차권의 경우,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다.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라. 노외주차장의 야간시간 이용요금은 50퍼센트 할인 금액으로 한다.
 - 마.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구청사의 월 정기주차권을 제한함으로써 인근 공영주차장을 대체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1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으로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단, 조례 개정 이전 설치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1년 이내 “안심스크린” 설치를 위한 시설 개선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의 제목 “과태료 부과”를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및 이동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
4.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앞에 “제7장 과태료 부과”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8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중봉대로 254 외 19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 도 로 명 고 시 일 | 도 로 명 부 여 사유 |
|------|-------|----------------------|----------------|-----------------|
| | | 별 도 열 람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11.0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0-11-09

| 연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170 | 인천광역시 서구 중평대로 254 (석남동) | 20090706 |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헌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 |
| 2 | 인천광역시 서구 향길동 128-68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454-12 (향길동) | 20081231 | 으뜸이 되는 담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 |
| 3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763-1 |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472-60 (당하동) | 20150806 | 경인 아라뱃길(수로) 건설로 일부구간을 철거 및 폐쇄하고 신규 우회하는 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간 변경 | |
| 4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54-1 |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67 (석남동) | 20090706 | 옛 관지촌 뒷산의 원 이름인 서달산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 |
| 5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2-6, 142-97 |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169 (가좌동) | 20090922 | 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명명 | |
| 6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161 | 인천광역시 서구 간지로 77-3 (석남동) | 20090922 | 이 도로의 중심 부근이 옛 간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간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언못) | |
| 7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17-1 |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12-6 (오류동) | 20090922 | 봉수대로에서 나와 단봉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도로 | |
| 8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39 |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29 (청라동) | 20101111 |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 |
| 9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45-5 | 인천광역시 서구 뱃길로 17 (오류동) | 20121025 | 아라뱃길의 지역적 특성 반영 | |
| 10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3-97 | 인천광역시 서구 가평로126번길 12 (가좌동) | 20090922 | 가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1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907 | 인천광역시 서구 간지로121번길 32-2 (석남동) | 20090922 | 간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2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38-2 |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422번길 33-11 (검암동) | 20090922 | 송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3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38-7 |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422번길 33-7 (검암동) | 20090922 | 송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4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10-12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물로49번길 1 (청라동) | 20120330 | 청라한물로의 시작점에서 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5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63 | 인천광역시 서구 북창로32번안길 11 (원창동) | 20131202 | 북창로32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6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1-2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3번길 10-20 (청라동) | 20101111 |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 |
| 17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0-13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3번길 18-20 (청라동) | 20101111 |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 |
| 18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53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31번안길 1 (가좌동) | 20170703 | 장고개로 시작지점에서 약2,31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고시일 : 2020-11-09

| 연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 | 변경전 도로명주소 | 변경후 도로명주소 | | | | |
| 1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8 |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81번길 3-4 (청라동) |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81번길 3-6 (청라동) | 분할 신청 | 20201012 |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 1동 |
| | | |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81번길 3-4 (청라동) | | | | 2동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0-11-09

| 연번 | 도로명주소 | 폐지사유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21번길 34 (석남동) | 철거 | 20090922 | 간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한국목재산업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660호

도로구역(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도로)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도로 건설사업”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도로법」 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 종류 | 노선명 | 구간 | 면적(m ²) |
|----------|------------------------|---|---------------------|
| 고속 국도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제130호선)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실동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 182,873 |

○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 및 IC개설공사

2. 사업내용

○ 사업명 : 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도로 건설사업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검암동, 계양구 독실동 일원

○ 사업량 : 182,873m²(고속도로 연결IC 및 요금소)

○ 사업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4.12.3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논현동) LH 인천지역본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의견제출 장소 동일)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기반과(☎032-560-452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032-560-8222)

○ 관계서류 : 위치도, 용지도 및 용지조서 열람장소 비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지조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 지 적 (㎡) | 편입면 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리 관계 | |
| 1 | 독실동 | 산65-4 | 도 | 1,057 | 1,057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 | 독실동 | 75-9 | 임 | 227 | 9 | 국 | 국토교통부 | | | | |
| 3 | 독실동 | 75-2 | 임 | 364 | 364 | 국 | 국토교통부 | | | | |
| 4 | 독실동 | 산66-2 | 도 | 322 | 322 | 국 | 국토교통부 | | | | |
| 5 | 독실동 | 산66-1 | 임 | 58 | 58 | 국 | 국토교통부 | | | | |
| 6 | 독실동 | 산67-3 | 도 | 108 | 108 | 국 | 국토교통부 | | | | |
| 7 | 독실동 | 75-3 | 임 | 336 | 336 | 국 | 국토교통부 | | | | |
| 8 | 독실동 | 74-10 | 전 | 14 | 14 | 국 | 국토교통부 | | | | |
| 9 | 독실동 | 74-17 | 전 | 11 | 11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0 | 독실동 | 74-6 | 전 | 130 | 130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1 | 독실동 | 74-16 | 전 | 176 | 176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2 | 독실동 | 272-11 | 도 | 34 | 34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3 | 독실동 | 64-6 | 답 | 44 | 44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4 | 독실동 | 64-9 | 답 | 143 | 2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5 | 독실동 | 67-2 | 답 | 105 | 14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6 | 독실동 | 67-4 | 답 | 156 | 156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7 | 독실동 | 65-2 | 답 | 110 | 110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8 | 독실동 | 64-7 | 답 | 132 | 132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9 | 독실동 | 63-4 | 답 | 177 | 104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0 | 독실동 | 30-2 | 철 | 14,383 | 4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1 | 독실동 | 73-12 | 임 | 23 | 23 | 국 | 국토교통부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 지 적 (㎡) | 편입면 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리 관계 | |
| 22 | 독실동 | 73-11 | 임 | 91 | 91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3 | 독실동 | 73-8 | 답 | 69 | 69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4 | 독실동 | 73-10 | 임 | 46 | 46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5 | 독실동 | 73-9 | 임 | 27 | 27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6 | 독실동 | 73 | 도 | 4,511 | 4,511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7 | 독실동 | 73-7 | 전 | 178 | 178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8 | 독실동 | 74-13 | 전 | 13 | 13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9 | 독실동 | 74-12 | 전 | 34 | 34 | 국 | 국토교통부 | | | | |
| 30 | 독실동 | 272-13 | 도 | 17 | 17 | 국 | 국토교통부 | | | | |
| 31 | 독실동 | 72-4 | 전 | 111 | 111 | 국 | 국토교통부 | | | | |
| 32 | 독실동 | 272-7 | 도 | 178 | 178 | 국 | 국토교통부 | | | | |
| 33 | 독실동 | 68-6 | 답 | 97 | 97 | 국 | 국토교통부 | | | | |
| 34 | 독실동 | 67-1 | 답 | 11 | 11 | 국 | 국토교통부 | | | | |
| 35 | 독실동 | 67-3 | 답 | 114 | 114 | 국 | 국토교통부 | | | | |
| 36 | 독실동 | 32 | 도 | 15,246 | 4,427 | 국 | 국토교통부 | | | | |
| 37 | 독실동 | 66-5 | 답 | 169 | 120 | 국 | 국토교통부 | | | | |
| 38 | 시천동 | 180 | 천 | 623 | 623 | 국 | 국토교통부 | | | | |
| 39 | 시천동 | 160-3 | 도 | 47 | 47 | 국 | 국토교통부 | | | | |
| 40 | 시천동 | 180-24 | 천 | 202 | 38 | 공 | 인천광역시 | | | | |
| 41 | 시천동 | 180-33 | 천 | 44 | 44 | 공 | 인천광역시 | | | | |
| 42 | 시천동 | 55-2 | 도 | 57 | 57 | 공 | 인천광역시 | | | | |
| 43 | 시천동 | 55-3 | 도 | 31 | 31 | 공 | 인천광역시 | | | | |
| 44 | 시천동 | 55-1 | 도 | 5 | 5 | 공 | 인천광역시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 지 적 (㎡) | 편입면 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리 관계 | |
| 45 | 시천동 | 187-9 | 도 | 14 | 14 | 공 | 인천광역시 | | | | |
| 46 | 시천동 | 51-2 | 도 | 31 | 31 | 공 | 인천광역시 | | | | |
| 47 | 시천동 | 54-7 | 답 | 715 | 715 | 공 | 인천광역시 | | | | |
| 48 | 시천동 | 51 | 도 | 3,376 | 3,376 | 국 | 국토교통부 | | | | |
| 49 | 시천동 | 51-1 | 유 | 25 | 25 | 공 | 인천광역시 | | | | |
| 50 | 시천동 | 49-4 | 전 | 348 | 348 | 공 | 인천광역시 | | | | |
| 51 | 시천동 | 51-3 | 도 | 344 | 344 | 공 | 인천광역시 | | | | |
| 52 | 시천동 | 50-2 | 도 | 53 | 53 | 국 | 국토교통부 | | | | |
| 53 | 시천동 | 49-6 | 도 | 75 | 75 | 공 | 인천광역시 서구 | | | | |
| 54 | 시천동 | 48-18 | 전 | 187 | 187 | 공 | 인천광역시 | | | | |
| 55 | 시천동 | 46-3 | 도 | 55 | 55 | 유*규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 | | | | |
| 56 | 시천동 | 46-4 | 도 | 25 | 25 | 유*규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 | | | | |
| 57 | 시천동 | 187-13 | 도 | 10 | 10 | 공 | 인천광역시 | | | | |
| 58 | 시천동 | 46-10 | 도 | 8 | 8 | 국 | 국토교통부 | | | | |
| 59 | 시천동 | 46-9 | 도 | 75 | 75 | 국 | 국토교통부 | | | | |
| 60 | 시천동 | 49-2 | 도 | 141 | 141 | 공 | 인천광역시 서구 | | | | |
| 61 | 시천동 | 187-12 | 도 | 71 | 71 | 공 | 인천광역시 | | | | |
| 62 | 시천동 | 49-5 | 도 | 360 | 125 | 공 | 인천광역시 서구 | | | | |
| 63 | 시천동 | 46-11 | 도 | 52 | 52 | 공 | 인천광역시 | | | | |
| 64 | 시천동 | 47 | 도 | 20 | 20 | 공 | 인천광역시 | | | | |
| 65 | 시천동 | 46-1 | 도 | 7 | 7 | 공 | 인천광역시 | | | | |
| 66 | 시천동 | 48-14 | 도 | 129 | 15 | 공 | 인천광역시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 지 적 (㎡) | 편입면 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리 관계 | |
| 67 | 시천동 | 187-8 | 도 | 232 | 119 | 공 | 인천광역시 | | | | |
| 68 | 시천동 | 45-2 | 답 | 49 | 10 | 공 | 인천광역시 | | | | |
| 69 | 시천동 | 44-3 | 도 | 540 | 540 | 공 | 인천광역시 | | | | |
| 70 | 시천동 | 180-34 | 천 | 2 | 2 | 공 | 인천광역시 | | | | |
| 71 | 시천동 | 187-7 | 도 | 6 | 6 | 공 | 인천광역시 | | | | |
| 72 | 시천동 | 54-9 | 도 | 14 | 14 | 공 | 인천광역시 서구 | | | | |
| 73 | 시천동 | 54-8 | 도 | 10 | 10 | 공 | 인천광역시 서구 | | | | |
| 74 | 시천동 | 54-2 | 도 | 56 | 56 | 공 | 인천광역시 | | | | |
| 75 | 시천동 | 54-4 | 도 | 155 | 155 | 공 | 인천광역시 서구 | | | | |
| 76 | 시천동 | 53-2 | 도 | 166 | 166 | 국 | 국토교통부 | | | | |
| 77 | 시천동 | 53-1 | 도 | 651 | 651 | 유*택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 | | | | |
| | | | | | | 경*온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 | | | | |
| | | | | | | 유*택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길 **(동교동) | | | | |
| | | | | | | 유*택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 | | | |
| | | | | | | 유*택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태창빌라 비동 ***호 | | | | |
| | | | | | | 유*택 | 부산광역시 남구 망미*동 ***-* | | | | |
| 78 | 시천동 | 180-9 | 천 | 553 | 553 | 국 | 국토교통부 | | | | |
| 79 | 시천동 | 54-3 | 도 | 66 | 66 | 유*택 | 인천광역시 북구 시천동 ** | | | | |
| 80 | 시천동 | 187 | 도 | 504 | 504 | 국 | 국토교통부 | | | | |
| 81 | 시천동 | 50-4 | 도 | 119 | 119 | 공 | 인천광역시 서구 | | | | |
| 82 | 시천동 | 180-11 | 천 | 455 | 455 | 국 | 국토교통부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 지 적 (㎡) | 편입면 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리 관계 | |
| 83 | 시천동 | 44 | 도 | 7,921 | 7,921 | 국 | 국토교통부 | | | | |
| 84 | 시천동 | 44-2 | 답 | 308 | 88 | 공 | 인천광역시 | | | | |
| 85 | 시천동 | 180-30 | 천 | 87 | 12 | 공 | 인천광역시 | | | | |
| 86 | 시천동 | 180-15 | 천 | 28 | 28 | 국 | 국토교통부 | | | | |
| 87 | 시천동 | 41-10 | 도 | 498 | 498 | 국 | 국토교통부 | | | | |
| 88 | 시천동 | 42-6 | 답 | 743 | 389 | 공 | 인천광역시 | | | | |
| 89 | 시천동 | 42-10 | 도 | 423 | 167 | 공 | 인천광역시 | | | | |
| 90 | 시천동 | 42-1 | 답 | 2,143 | 81 | 국 | 국토교통부 | | | | |
| 91 | 시천동 | 67-1 | 답 | 79 | 79 | 공 | 인천광역시 | | | | |
| 92 | 시천동 | 42-7 | 답 | 99 | 99 | 공 | 인천광역시 | | | | |
| 93 | 시천동 | 67-3 | 도 | 125 | 125 | 공 | 인천광역시 | | | | |
| 94 | 시천동 | 42-2 | 답 | 3 | 3 | 공 | 인천광역시 | | | | |
| 95 | 시천동 | 67-2 | 답 | 8 | 8 | 공 | 인천광역시 | | | | |
| 96 | 시천동 | 67 | 답 | 833 | 77 | 국 | 국토교통부 | | | | |
| 97 | 시천동 | 68-4 | 전 | 303 | 303 | 공 | 인천광역시 | | | | |
| 98 | 시천동 | 41-11 | 도 | 192 | 192 | 국 | 국토교통부 | | | | |
| 99 | 시천동 | 68-5 | 전 | 596 | 549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00 | 시천동 | 68-1 | 전 | 172 | 155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01 | 시천동 | 68-3 | 전 | 1,025 | 1,025 | 공 | 인천광역시 | | | | |
| 102 | 시천동 | 41-5 | 임 | 46 | 46 | 공 | 인천광역시 | | | | |
| 103 | 시천동 | 41-3 | 임 | 106 | 106 | 공 | 인천광역시 | | | | |
| 104 | 시천동 | 41-12 | 유 | 125 | 125 | 공 | 인천광역시 | | | | |
| 105 | 시천동 | 183-1 | 도 | 1,028 | 98 | 국 | 국토교통부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 지 적 (㎡) | 편입면 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리 관계 | |
| 106 | 시천동 | 41-6 | 임 | 20 | 20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07 | 시천동 | 41-14 | 임 | 681 | 681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08 | 시천동 | 산20-3 | 구 | 780 | 780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09 | 시천동 | 산20-8 | 구 | 121 | 121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10 | 시천동 | 산20-2 | 임 | 1,114 | 1,114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11 | 시천동 | 180-29 | 천 | 2,379 | 540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12 | 시천동 | 41-18 | 구 | 229 | 229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13 | 시천동 | 41-17 | 구 | 671 | 671 | 공 | 인천광역시 | | | | |
| 114 | 시천동 | 41-13 | 임 | 3,043 | 1,010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15 | 시천동 | 산20-9 | 임 | 1,018 | 1,018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16 | 시천동 | 41-9 | 구 | 4,226 | 648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17 | 시천동 | 82-16 | 임 | 986 | 986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18 | 시천동 | 82-15 | 임 | 872 | 872 | 공 | 인천광역시 | | | | |
| 119 | 시천동 | 82-1 | 임 | 291 | 262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20 | 시천동 | 82-2 | 임 | 5,417 | 656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21 | 시천동 | 82-17 | 임 | 2,523 | 2,052 | 공 | 인천광역시 | | | | |
| 122 | 시천동 | 82-18 | 임 | 2,208 | 2,151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23 | 시천동 | 산21-4 | 임 | 1,543 | 1,543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24 | 시천동 | 82-20 | 임 | 1,294 | 1,190 | 공 | 인천광역시 | | | | |
| 125 | 시천동 | 산22-5 | 임 | 1,345 | 1,345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26 | 시천동 | 82-22 | 임 | 95 | 64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27 | 시천동 | 82-5 | 임 | 2,854 | 2,854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28 | 시천동 | 82-21 | 임 | 2,833 | 244 | 공 | 인천광역시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 지 적 (㎡) | 편입면 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
| 129 | 시천동 | 180-14 | 철 | 312 | 52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30 | 시천동 | 180-35 | 천 | 444 | 444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31 | 시천동 | 43-2 | 철 | 127 | 75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32 | 시천동 | 43-1 | 철 | 19 | 19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33 | 시천동 | 42-8 | 철 | 764 | 110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34 | 시천동 | 42-5 | 철 | 18 | 18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35 | 시천동 | 41-2 | 철 | 61 | 50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36 | 시천동 | 41-1 | 철 | 19 | 19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37 | 시천동 | 41 | 도 | 3,851 | 3,851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38 | 시천동 | 산19-5 | 철 | 3,792 | 1,624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39 | 시천동 | 41-4 | 도 | 5,208 | 5,208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40 | 시천동 | 40 | 전 | 2,199 | 1,138 | 김*태 |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 ***동 ****호(약대동, 부천두산위브 트래지움) | | | | |
| | | | | | | 조*철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 ***동 ***호(청라동, 청라엘에이치) | | | | |
| 141 | 시천동 | 40-4 | 전 | 1,848 | 1,181 | 임*재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로 ***-***, ***호(서운동) | 부평구 부평10로100번지 1001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 (갈산 동) | 근저 당권 | |
| 142 | 시천동 | 40-5 | 철 | 429 | 404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43 | 시천동 | 24-8 | 전 | 1,283 | 33 | 정*근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길 **, ***동 ***호(이촌동, 한가람아파트) | | | | |
| | | | | | | 김*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 지 적 (㎡) | 편입면 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
| 144 | 시천동 | 산17-6 | 임 | 60 | 60 | 정*근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 | | | | |
| 145 | 시천동 | 산14-4 | 구 | 3,964 | 3,240 | 한*농 어촌공 사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빛가람동) | | | | |
| 146 | 시천동 | 40-8 | 철 | 30 | 30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47 | 시천동 | 40-2 | 구 | 319 | 319 | 한*농 어촌공 사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 | | | |
| 148 | 시천동 | 40-7 | 철 | 312 | 312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49 | 시천동 | 40-3 | 철 | 17 | 17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50 | 시천동 | 40-1 | 철 | 155 | 155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51 | 시천동 | 산20-6 | 임 | 198 | 198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52 | 시천동 | 산20-1 1 | 철 | 16 | 16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53 | 시천동 | 산17-1 1 | 임 | 1,382 | 1,382 | 김*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 방이금호어울 림아파트 ***-*** | | | | |
| 154 | 시천동 | 40-6 | 철 | 1,108 | 1,108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55 | 시천동 | 산20-1 0 | 철 | 175 | 175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56 | 시천동 | 산17-2 | 철 | 397 | 397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57 | 시천동 | 산17-1 3 | 철 | 72 | 72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58 | 시천동 | 산17-1 0 | 임 | 3,184 | 3,184 | 나*익 | 인천광역시 남구 옥련동 *** | | | | |
| | | | | | | 나*구 | 경기도 부천시 남구 송내동 ***-* | | | | |
| | | | | | | 나*흥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 | | | | |
| 159 | 시천동 | 산17-1 | 임 | 2,761 | 315 | 강*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 방이금호어울 림아파트 ***-*** | 한 국 전 력 공 사 | 서울특별 시 강남구 삼성동 *** | 지상 권 | |
| 160 | 시천동 | 산17-1 2 | 철 | 3,256 | 1,268 | 국 | 국토교통부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 지 적 (㎡) | 편입면 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
| 161 | 시천동 | 산20-1 2 | 철 | 983 | 983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62 | 시천동 | 산14-1 1 | 철 | 2,564 | 74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63 | 시천동 | 산21-7 | 철 | 487 | 71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64 | 시천동 | 산21-5 | 철 | 2,499 | 9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65 | 시천동 | 산20-4 | 도 | 26,587 | 26,587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66 | 시천동 | 산17-4 | 임 | 10,314 | 8,130 | 최*애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주공아파트 ***동 ***호 | 한국전력공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 지상 권 | |
| | | | | | | 정*섭 |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 ***번길 *(석남동) | | | | |
| 167 | 시천동 | 산14-2 | 임 | 7,041 | 4,700 | 김*숙 |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풍림아파트 ***-*** | 한국전력공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 구분 지상 권 | |
| | | | | | | 이*화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동 ****호(간석동 간석래미안자 이아파트) | 조*원 | 부산광역시 시 북구 화명신도 시로 ***, ***동 ****호(화명동, 코오롱하 늘채*차아 파트) | 근저 당권 | |
| | | | | | | 손*훈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 | | | |
| | | | | | | 손*훈 |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번 길 **, *층(용현동) | | | | |
| 168 | 시천동 | 산14-1 | 임 | 21,406 | 148 | 구*훈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 | | | | |
| 169 | 시천동 | 24-11 | 임 | 201 | 201 | 박*수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번길 *, ***동 ***호(검암동, 서해그랑블) | | | | |
| 170 | 시천동 | 22-2 | 구 | 17 | 17 | 한*동 어촌공 사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 | | | |
| 171 | 시천동 | 산14-8 | 구 | 298 | 298 | 한*동 어촌공 사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빛가람동)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 지 적 (㎡) | 편입면 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
| 172 | 시천동 | 산14-6 | 임 | 490 | 490 | 이*삼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번 길** ***동 ***호(가정동 ,하나아파트) | 한국전력공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 구분 지상 권 | |
| 173 | 시천동 | 22-5 | 답 | 261 | 232 | 민*자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 | 한국전력공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 임차 권 | |
| 174 | 시천동 | 22-6 | 답 | 2,360 | 2,360 | 심*진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번 길** | 한국전력공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 임차 권 | |
| | | | | | | 0* | | 인천축산업협동조합 |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주안 동) | 근저 당권 | |
| | | | | | | 0* | | 주식회사우성사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오 정동) | 근저 당권 | |
| 175 | 시천동 | 22-3 | 전 | 109 | 4 | 박*화 |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 ****동, ***호(상동,다 정한마을) | | | | |
| 176 | 시천동 | 산12-6 | 구 | 46 | 46 | 한*농 어촌공 사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 | | | |
| 177 | 시천동 | 22-8 | 전 | 7 | 7 | 박*화 |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 ****동, ***호(상동,다 정한마을) | | | | |
| 178 | 시천동 | 산12-9 | 임 | 1,322 | 406 | 송*규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 한국아파트 ***동 ****호 | | | | |
| 179 | 시천동 | 22-9 | 전 | 89 | 89 | 박*화 |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 ****동, ***호(상동,다 정한마을) | | | | |
| 180 | 시천동 | 산12-1 8 | 임 | 331 | 100 | 구*현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파장동)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 지 적 (㎡) | 편입면 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 명 | 주소 | 권리 관계 | |
| 181 | 시천동 | 산12-7 | 구 | 10 | 10 | 한*동 어촌공 사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 | | | |
| 182 | 시천동 | 산12-1 9 | 임 | 678 | 29 | 최*인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로 ***(임학동) | | | | |
| 183 | 시천동 | 22-10 | 전 | 608 | 14 | 정*분 | 충남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 | | | | |
| | | | | | | 심*보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번길 ** *동 ***호(산곡동, 한신휴아파트) | | | | |
| 184 | 시천동 | 22-4 | 구 | 2,674 | 1,179 | 한*동 어촌공 사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 | | | |
| 185 | 시천동 | 22-11 | 전 | 7,157 | 6,295 | 박*화 |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 *****동, ***호(상동, 다 정한마을) | 한*국*진*력*도*사 | 서울특별 시 강남구 삼성동 *** | 임차 권 | |
| | | | | | | 0* | | 어*정*도*지*도*지*도*지*도*사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원중 동) | 근저 당권 | |
| 186 | 시천동 | 17-3 | 답 | 689 | 394 | 이*섭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동*** *호(신현동, 신 현이-편한세상, 하늘채아파트) | | | | |
| 187 | 시천동 | 17-13 | 답 | 689 | 521 | 이*환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읍치로 ***번길 ** | | | | |
| 188 | 시천동 | 산9-3 | 임 | 1,587 | 206 | 이*희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미도아파트 *-*** | | | | |
| 189 | 시천동 | 18-1 | 전 | 1,514 | 1,514 | 한*옥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 | 서*인*진*기*도*지*도*지*도*사 | 인천광역 시 서구 신현동 ***** | 근저 당권 | |
| 190 | 시천동 | 산9-2 | 구 | 1,587 | 8 | 한*동 어촌공 사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 | | | |
| 191 | 시천동 | 산11-3 | 임 | 198 | 198 | 이*조 | -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 지 적 (㎡) | 편입면 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
| 192 | 시천동 | 산11-1 | 구 | 99 | 31 | 한*농 어촌공 사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 | | | |
| 193 | 시천동 | 산10-5 | 구 | 893 | 45 | 한*농 어촌공 사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 | | | |
| 194 | 시천동 | 산10-6 | 임 | 992 | 992 | 김*봉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 | | | | |
| 195 | 시천동 | 5-3 | 전 | 307 | 233 | 정*섭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 | | | | |
| 196 | 시천동 | 5-2 | 구 | 271 | 2 | 한*농 어촌공 사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 | | | |
| 197 | 시천동 | 24-7 | 전 | 2,129 | 963 | 김*수 |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번 길 ***(신현동) | 서인천농업협동조합 | 인천광역 시 서구 청라에메 랄드로** *번길 ***(청라동 서인천농 협) | 근저권 | |
| 198 | 시천동 | 산15-3 | 구 | 99 | 99 | 한*농 어촌공 사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포일동) | | | | |
| | | | | | | 신*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길 **, ***동 ****호(송파동 래미안송파파 인탑) | | | | |
| | | | | | | 신*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동 ***호(역삼동) | | | | |
| 199 | 시천동 | 24-12 | 답 | 800 | 10 | 최*식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 | | | | |
| 200 | 시천동 | 24-9 | 전 | 151 | 151 | 김*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 | 정*근 | 서울특별 시 용산구 이촌로** 길 **, ***동 ***호(이 촌동, 한가람아 파트) | 가처분 | |
| | | | | | | 정*섭 |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번길 *(석남동)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 지 적 (㎡) | 편입면 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
| 201 | 시천동 | 24 | 답 | 1,061 | 669 | 최*식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 | 최*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대림아파 트 **-**** | 근저 당권 | |
| 202 | 시천동 | 24-10 | 전 | 336 | 336 | 박*수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번길 *,***동 ***호(검암동, 서해그랑블) | | | | |
| 203 | 시천동 | 24-5 | 전 | 469 | 66 | 박*환 | 인천광역시 북구 계산동 ****- | | | | |
| 204 | 시천동 | 24-3 | 구 | 612 | 187 | 한*동 어촌공 사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 | | | |
| 205 | 시천동 | 24-2 | 전 | 1,898 | 889 | 윤*준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번길 *-(검암동) | 서인천40전폐합 조합 | 인천광역 시 서구 가정로 ***-(신현 동) | 근저 당권 | |
| | | | | | | 윤*아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번길 *-(검암동) | 서인천40전폐합 조합 | 인천광역 시 서구 가정동 ***- | 지상 권 | |
| | | | | | | 정*옥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번길 *-(검암동) *층(검암동) | | | | |
| 206 | 시천동 | 24-1 | 전 | 684 | 9 | 윤*준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번길 *-(검암동) | 서인천40전폐합 조합 | 인천광역 시 서구 가정로 ***-(신현 동) | 근저 당권 | |
| | | | | | | 윤*아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번길 *-(검암동) | 서인천40전폐합 조합 | 인천광역 시 서구 가정동 ***- | 지상 권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 지 적 (㎡) | 편입면 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리 관계 | |
| | | | | | | 정*옥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번길 *~** *층(검암동) | | | | |
| 207 | 시천동 | 22-1 | 답 | 724 | 724 | 심*진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번 길** | 인천북산산업개발조합 한구전력공사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번길 ** | 근저 당권 | |
| 208 | 시천동 | 16 | 답 | 1,633 | 697 | 정*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금호타운 ***동 ***호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 임차 권 | |
| 209 | 시천동 | 17-12 | 답 | 689 | 689 | 이*미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 인천신영보증재단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번길 *~* *층(고잔 동 인천총합스 비즈니스 센터)(남 부지점) | 가압 류 | |
| | | | | | | 이*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비**호 | | | | |
| | | | | | | 윤*태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 ***동 ***호 | | | | |
| 210 | 시천동 | 17-4 | 답 | 5,445 | 2,067 | 박*일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 ***호 | 서인천신영보증재단 조합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 | 근저 당권 | |
| 211 | 시천동 | 17-11 | 답 | 1,378 | 1,378 | 이*경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번길 **(검암동) | | | | |
| | | | | | | 이*섭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번길 *, *층(가정동) | | | | |
| | | | | | | 이*숙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길 ***~*, ***동 ***호(답십리 동, 동아아파트)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 지 적 (㎡) | 편입면 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
| | | | | | | 신*금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로 **, ***동 ***호(가정동, 루원시티프라 디움) | | | | |
| | | | | | | 이*정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로 **, ***동 ***호(가정동, 루원시티프라 디움) | | | | |
| | | | | | | 이*연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로 **, ***동 ***호(가정동, 루원시티프라 디움) | | | | |
| | | | | | | 이*숙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 ***동 ***호 | | | | |
| 212 | 시천동 | 18 | 전 | 1,064 | 1,064 | 이*진 | 인천광역시 서구 에메랄드로**, ***동 ***호(연희동 ,청라자이) | | | | |
| 213 | 시천동 | 18-2 | 전 | 132 | 132 | 박*남 | 경성부 다육정** | | | | |
| | | | | | | 판*문 일*랑 | 경성부 남대문동 *정목 **번지 | | | | |
| 214 | 시천동 | 9-1 | 전 | 883 | 883 | 한*순 |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 ***동 ***호(가정동, 한국아파트) | | | | |
| | | | | | | 김*순 |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 ***동 ***호(가정동, 한국아파트) | | | | |
| 215 | 시천동 | 10 | 전 | 648 | 555 | 박*일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 | | | | |
| 216 | 시천동 | 9-2 | 답 | 426 | 426 | 한*순 |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 ***동 ***호(가정동, 한국아파트) | | | | |
| | | | | | | 김*순 |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 ***동 ***호(가정동, 한국아파트)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 지 적 (㎡) | 편입면 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리 관계 | |
| 217 | 시천동 | 11 | 잡 | 856 | 56 | 국 | 기획재정부 | | | | |
| 218 | 시천동 | 8 | 답 | 592 | 236 | 이*기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 | | | | |
| 219 | 시천동 | 7 | 답 | 1,140 | 396 | 이*기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 | | | | |
| 220 | 시천동 | 6-3 | 답 | 5,458 | 1,937 | 서*선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번길 ** | 서인천101면140-3합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 (신현 동) | 근저 당권 | |
| | | | | | | 윤*영 | 인천광역시 서구 꽃외로 *** | | | | |
| | | | | | | 윤*영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번길 **, ***동 ***호 | | | | |
| | | | | | | 윤*영 | 인천광역시 서구 삼곡로***번길 **, *동 ***호 | | | | |
| 221 | 시천동 | 82-23 | 임 | 103 | 88 | 공 | 인천광역시 | | | | |
| 222 | 시천동 | 82-24 | 임 | 216 | 72 | 공 | 인천광역시 | | | | |
| 223 | 시천동 | 83-1 | 답 | 212 | 58 | 공 | 인천광역시 | | | | |
| 224 | 시천동 | 82-25 | 임 | 290 | 92 | 공 | 인천광역시 | | | | |
| 225 | 시천동 | 82-28 | 임 | 11 | 5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26 | 시천동 | 82-7 | 임 | 606 | 606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27 | 시천동 | 83-6 | 답 | 297 | 297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28 | 시천동 | 82-8 | 임 | 1,290 | 1,163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29 | 시천동 | 산24-4 | 임 | 525 | 44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30 | 검암동 | 67-6 | 도 | 1,538 | 1,538 | 공 | 인천광역시 | | | | |
| 231 | 검암동 | 149-8 | 답 | 120 | 120 | 공 | 인천광역시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 지 적 (㎡) | 편입면 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
| 232 | 검암동 | 149-7 | 답 | 184 | 184 | 공 | 인천광역시 | | | | |
| 233 | 검암동 | 148-2 | 답 | 144 | 144 | 공 | 인천광역시 | | | | |
| 234 | 검암동 | 485-10 | 천 | 227 | 32 | 공 | 인천광역시 | | | | |
| 235 | 검암동 | 155-20 | 답 | 103 | 32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36 | 검암동 | 155-13 | 답 | 125 | 125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37 | 검암동 | 67 | 도 | 36,144 | 22,889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38 | 검암동 | 154-1 | 답 | 173 | 173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39 | 검암동 | 153-2 | 답 | 24 | 24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40 | 검암동 | 151-4 | 철 | 417 | 36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41 | 검암동 | 151-2 | 답 | 70 | 70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42 | 검암동 | 150-4 | 철 | 1,749 | 56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43 | 검암동 | 150-5 | 답 | 60 | 45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44 | 검암동 | 485-5 | 도 | 319 | 319 | 국 | 국토교통부 | | | | |
| 245 | 검암동 | 63-5 | 전 | 12 | 12 | 국 | 기획재정부 | | | | |
| 246 | 검암동 | 64 | 도 | 413 | 413 | 국 | 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 | |

■ 지장물 조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단 위 | 수량 | 소유자 | | 비고 |
|----------|-----------|-------|-----------|----------------|----------------|-----|-------------|----------------------------------|----|
| | | | | | | | 성명 | 주소 | |
| 1 | 서구 시천동 | 산14-1 | 창고 | 조립식판넬, 함석조 | m ² | 37 | 구*훈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 | |
| | 서구 시천동 | | 담장 | 철재펜스 | m | 40 | | | |
| 2 | 서구 시천동 | 18-1 | 비닐하우 스 | 파이프,비닐 | m ² | 942 | 한*옥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 | |
| | 서구 시천동 | | 비닐하우 스 | 파이프,비닐,차 양막 | m ² | 74 | | | |
| | 서구 시천동 | | 비닐하우 스 | 파이프,비닐,차 양막 | m ² | 27 | | | |
| | 서구 시천동 | | 견사 | 철재우리 | m ² | 12 | | | |
| | 서구 시천동 | | 주거시설 | 파이프,비닐,차 양막 | m ² | 171 | | | |
| | 서구 시천동 | | 창고 | 파이프,비닐,차 양막 | m ² | 157 | | | |
| | 서구 시천동 | | 물탱크 | PE | 개 | 1 | | | |
| | 서구 시천동 | | 계사 | 목조 | m ² | 5 | | | |
| | 서구 시천동 | | 담장 | 철재우리 | m | 28 | | | |
| 3 | 서구 시천동 | 6-3 | 농막 | 파이프,천막 | m ² | 8 | 서*선 외 *인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번길 ** | |
| | 서구 시천동 | | 창고 | 파이프,비닐,차 양막 | m ² | 46 | | | |
| | 서구 시천동 | | 창고 | 파이프,비닐,차 양막 | m ² | 47 | | | |
| | 서구 시천동 | | 창고 | 파이프,비닐,차 양막 | m ² | 25 | | | |
| | 서구 시천동 | | 비닐하우 스 | 파이프,비닐 | m ² | 8 | | | |
| | 서구 시천동 | | 비닐하우 스 | 파이프,비닐 | m ² | 26 | | | |
| | 서구 시천동 | | 농막 | 파이프,비닐 | m ² | 16 | | | |
| | 서구 시천동 | | 수목 | 조경수 | 주 | 70 | | | |
| 4 | 서구 시천동 | 24-7 | 비닐하우 스 | 파이프,비닐 | m ² | 168 | 김*수 |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번길 ***(신현동) | |
| | 서구 시천동 | | 담장 | 철재,펜스 | m | 30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단 위 | 수량 | 소유자 | | 비고 |
|----------|-----------|------|-----------|---------|----------------|-----|-----|----------------------------------|----|
| | | | | | | | 성명 | 주소 | |
| 5 | 서구 시천동 | 24-7 | 비닐하우 스 | 파이프,비닐 | m ² | 64 | 김*수 |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번길 ***(신현동) | |
| | 서구 시천동 | | 관정 | - | 개 | 1 | | | |
| | 서구 시천동 | | 담장 | 철재펜스 | m ² | 101 | | | |
| | 서구 시천동 | | 창고 | 조립식,판넬조 | m ² | 7 | | | |
| 6 | 서구 시천동 | 22-6 | 정자 | 목조 | m ² | 23 | 심*진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번길** | |
| | 서구 시천동 | | 화장실 | pvc | m ² | 1 | | | |
| | 서구 시천동 | | 담장 | 철재펜스 | m | 87 | | | |
| | 서구 시천동 | | 수목 | 조경수 | 주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674호

행복한 서로이음 임대주택 입주희망자 2차 모집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주택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최소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행복한 서로이음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2차로 모집합니다.

2020. 11.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신청기간: 2020. 11. 3. ~ 2020. 11. 17. 18시 까지 (15일간)
2.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서구거주자 이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 하는 사람

| 순위 | 입주자격 | 증빙서류 |
|-----|----------------|--|
| 1순위 | (예비) 신혼부부 | · 예식장 계약서(예비부부 검증용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예비신혼부부는 6개월내 결혼 예정인 부부,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인 부부 |
| 2순위 | 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예술인 | · 청년창업자는 사업자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청년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서 1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증) 주민등록초본 1부. ※ 청년창업자와 청년예술인은 모집공고일 기준 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 3순위 | 한부모가정 |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 4순위 |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3. 신청방법

- 접수처: 서구청 본관 3층 주택과 [☎ 032-560-4736, 4739]

- 신청방법: 입주신청서(붙임1) 및 증빙서류와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구비 후 직접방문(방문접수는 근무시간에 한함) 또는 메일(eenzi8503@korea.kr)로 신청
(※ 메일 신청시 반드시 유선으로 도착 여부 확인 필요하며 서류미비시 접수 불가)

4.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입주 우선순위는 신청인의 인천 서구 연속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 1순위 입주 적합 대상자가 없는 경우 2순위, 3순위, 4순위 순서대로 모집하되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 서구 연속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선정
- 입주예정자 사정상 미입주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임대주택별로 3배수 모집
 - 예비입주자 결정은 신청 임대주택별로 1순위가 우선이며, 2순위, 3순위, 4순위 순서대로 모집
 - 예비입주자의 입주자격 유효는 금회 임대주택에 한해 공고일부터 1년간 유지됨

5. 결과발표

- 일 시: 2020. 11. 20.(금) 15:00 이후
- 방 법: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에게만 개별 통보(유선) 하며, 미당첨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 6. 입주가능(예정)일: 입주자 결정 이후 즉시(12월 중순부터 2021년 1월까지 가능하며 리모델링 공사완료 후 임대자와 협의 후 결정)

7. 임대주택 현황

| 임대주택 번호 | 위 치 | 모집 세대 | 임대 현황 | | | | 임대료(만원) | | 임대기간 |
|------------|---|----------|-------------|---------|----|---------------------|---------|----|------|
| | | | 구 조 | 해당 층 | 방수 | 면적(m ²) | 보증금 | 월세 | |
| 2020-3 | 인천 서구 석남동 469-4 힐튼빌라 제A동 3층 제301호 | 1 | 조적조/ 슬래브 | 3 | 2 | 36.42 | 400 | - | 4년 |
| 2020-4 | 인천 서구 가정동 559-5 대동그린빌라 제3동 2층 제201호 | 1 | 조적조/ 슬래브 | 2 | 3 | 36.12 | 300 | - | 3년 |

8. 유의사항

- 신청자는 임대주택 1개소만 신청해야 함. (2개 신청 불가)
- 위 임대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와 주택소유자가 협약을 통해 3-4년간
신혼부부 등
공적 임대하기로 약정한 행복한 서로이음 임대주택임
* 3-4년이란, 주택소유자가 서구와 협약을 맺고 최초 임대차 계약한
날로부터 3-4 년을 말함
- 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결과는 서구와 주택소유자간의 협약을 실현하
기 위한 임의방식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한
효력이나 권리관계와 무관하며, 주택소유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서구는 위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며, 시설물의 유지관리 권한이
없고 주택소유자가 건축물 관리를 함
- 임대차계약은 건축물소유자와 입주자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함

9. 기타 문의사항: 서구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 032-560-4736, 4739

10. 입주신청서식 및 입주설명서: 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 붙임 1. 행복한 서로이음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1부.
2. 행복한 서로이음 빈집 입주 설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끝.

붙임 2

| <h2 style="text-align: center;">행복한 서로이음 빈집 입주 설명서</h2> <h3 style="text-align: center;">[임대주택번호 2020-3, 4년 임대]</h3> | | | | | | | |
|---|--|--|-------|---------|----------|-----------------|----------|
| 건물현황 | 소재지 | 인천 서구 석남동469-4 힐튼빌라 제A동 3층 제301호 | | | 건축 년도 | 1990년 | |
| | 층수 / 면적(m ²) | 3층 / 36.42m ² | | | 구조 | 조적조 / 슬래브 | |
| | 시설현황 | 주거형태 (단독, 다세대 등) | 방 | 주방 | 화장실 | 기타 | |
| | | 다세대 | 2 | - | 1 | 거실 겸 주방1 | |
| 임대계획 | 공급인원 및 입주대상 | | | 임대료(만원) | | | 입주예정일 |
| | 공급인원 | 입주자격 | 남녀 구분 | 전세 | 월세 | 보증금 | |
| | 1세대 | (예비)신혼부부, 청년창업자, 청년예술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없음 | - | - | 300만원 (삼백만원) | 2020.12월 |
| 비치 품목 | | | | | | | |
| 참고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설명서는 입주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임 ▷ 해당주택은 4년간 임대조건이며, 기간 만료 전 퇴거를 원할 경우 사유 발생 즉시 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이후 연장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 ▷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 | | | | |

행복한 서로이음 입주 설명서

위치도



현장 사진



☞ 내부 리모델링 공사 진행 예정으로 현재 외부 전경 사진 첨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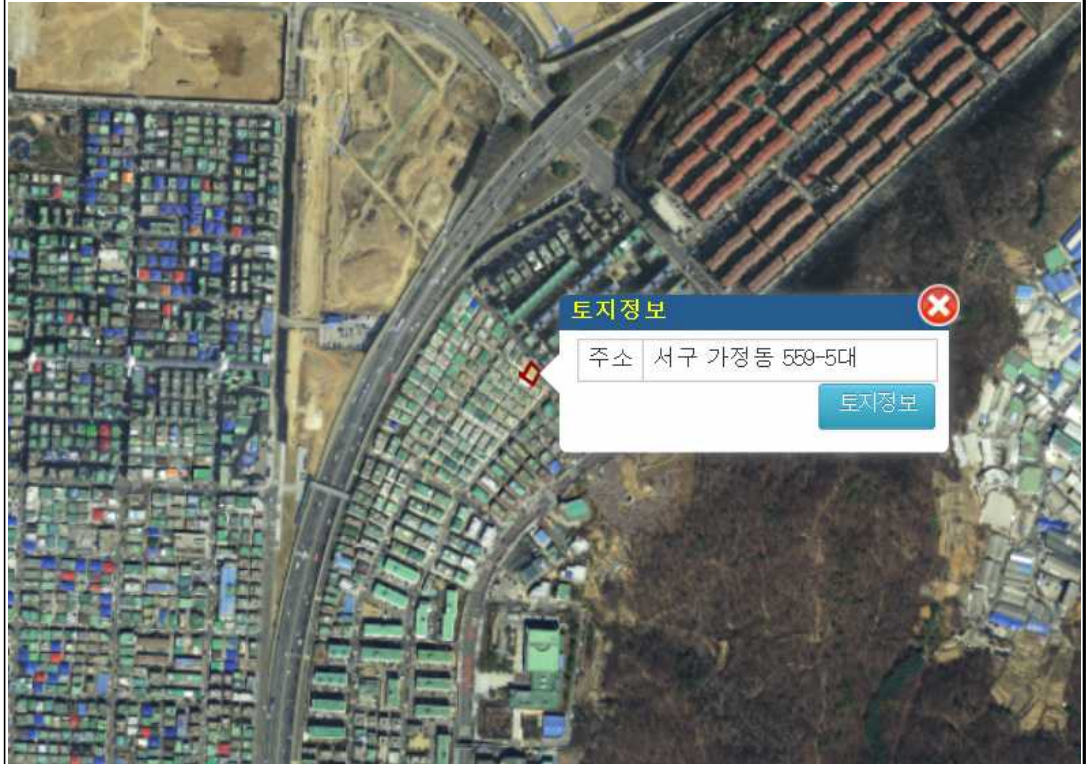
행복한 서로이음 빈집 입주 설명서

[임대주택번호 2020-4, 3년 임대]

| | | | | | | | |
|----------|--|--|-------|---------|----------|-----------------|----------|
| 건물현황 | 소재지 | 인천 서구 가정동 559-5 대동그린빌라 제3동 2층 제201호 | | | 건축 년도 | 1990년 | |
| | 층수 / 면적(m ²) | 2층 / 36.12m ² | | | 구조 | 조적조 / 슬래브 | |
| | 시설현황 | 주거형태 (단독, 다세대 등) | 방 | 주방 | 화장실 | 기타 | |
| | | 다세대 | 3 | - | 1 | 거실 겸 주방 1 | |
| 임대계획 | 공급인원 및 입주대상 | | | 임대료(만원) | | | 입주예정일 |
| | 공급인원 | 입주자격 | 남녀 구분 | 전세 | 월세 | 보증금 | |
| | 1세대 | (예비)신혼부부, 청년창업자, 청년예술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없음 | - | - | 300만원 (삼백만원) | 2020.12월 |
| 비치 품목 | | | | | | | |
| 참고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설명서는 입주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임 ▷ 해당주택은 3년간 임대조건이며, 기간 만료 전 퇴거를 원할 경우 사유 발생 즉시 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이후 연장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 ▷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 | | | | |

행복한 서로이음 입주 설명서

위치도



현장 사진



☞ 내부 리모델링 공사 진행 예정으로 현재 외부 전경 사진 첨부함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 - 1676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4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11.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사 업 명 : 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4단계)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 열람 기간 : 2020.11.04. ~ 2020.11.19.(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구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 032-560-4494
 - 계양공원사업소 공원조성팀(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로 990), ☎ 032-458-7182
 - 한국감정원 북부보상사업단(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3-6,201호), ☎ 032-569-7566
- 의견제출기간 : 2020.11.04. ~ 2020.11.19.(15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해당 사항 없음.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48-48 대문 외 108건
 - 물건 소유자: 엄○○(인천광역시 서구 ○○동 ○○○-○○)외 4인.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